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진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6
----------	--------

발의년월일 : 2013. 11. 19.

발 의 자 : 오진아·강성국·김수진

김순금·마동환·박영길

서종수·유동균·이필례

장영숙·조남진·조영덕

차재홍·한일용의원(14명)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안 제2조)

나. 위촉대상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추가(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명시(안 제7조)

마.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제11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가. 소요예산 : 2,420천원

나. 산출기준

- 위원참석수당 : 13명×70,000원×2회 : 1,820천원

- 업무추진비 : 300,000원×2회 : 600천원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11. 20 ~ 11. 25(제출된 의견 없음)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제4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1회”를 “2회”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본문 중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p> <p>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p>	<p>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각 호-----.</p> <p>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p> <p>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p> <p>3.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p> <p>4.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 1명 ----- 30명 이내----- -----.</p> <p>②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생략)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마포구 소속 공무원

<신설>

<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주민생활국장-----.

③ -----
----- 사람 -----
----- 1 이상-----.

1. (현행과 같음)
2. ----- 복지정책 -----
----- 사람 -----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 한 차례만 연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④ (생략)</p> <p>⑤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⑥ (생략)</p> <p><신설></p>	<p>정되는 경우</p> <p>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총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p> <p>② 정기회의----- 2회 ----- 임시회의-----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민법」 제77조에 따른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p>
---	---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 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의

제15조(운영규정) 시행에